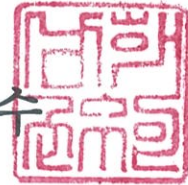


「고사~동비(지방도1024호선)간 도로확포장공사」 보상계획 열람공고

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『고사~동비(지방도1024호선)간 도로확포장공사』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해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본 공고문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. 7. 22.

남 해 군 수



1. 사업개요

- 사 업 명 : 『고사~동비(지방도1024호선)간 도로확포장공사』
- 위 치 :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일원
- 사 업 량 : L=1.68km, B=11.0 ~ 12.5m(2차로)
- 사업시행자 : 경상남도

2. 열람공고 기간 : 2020. 7. 22. ~ 2020. 8. 5.(14일간)

3.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

- 토지 : 설천면 비란리 1042-2 외 242필지
 - 물건 :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부
- ※ 토지 등 세부내역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며,
남해군 홈페이지(<http://www.namhae.go.kr> ⇒ 고시공고)에서도 확인 가능

4. 열람 및 이의신청

- 열람(이의신청)기간 : 2020. 7. 22. ~ 2020. 8. 5.
- 열람 장소 :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(☎ 055-860-3314)
-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: 기간 내 남해군청 건설교통과에 서면으로 제출,
※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

5.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

- 열람기간 만료 후 보상협의 개별통지 할 것이나,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함

6. 보상절차, 보상방법 및 보상시기

- 보상절차 : 보상계획 열람 공고 → 보상액 산정 →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지급
 -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재결 진행 예정임
- 보상방법 : 토지소유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남해군수(건설교통과)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지급함
- 보상시기 :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후 개별통지

7.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: 【붙임】 참조

- ※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추후 지적측량 등 행정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붙임 토지 및 물건조서 1부.

의견서

1. 공사명	고사~동비(지방도1024호선)간 도로확포장공사
2. 당사자	성명(명칭)
	주 소
3. 의견	
4. 기타	
<p>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 . . .</p> <p>의견제출인 주 소 :</p> <p style="padding-left: 100px;">성 명 : 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100px;">전화번호 :</p> <p>남해군수 귀하</p>	
비 고	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